



APCASO 인권 협약

-HIV/AIDS에 대한 공동체적 대처 방안의 기본 구조-

II. 인권에 관한 규범

A. 사생활에 대한 권리

누구도 개인의 HIV 감염 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하거나, AIDS 감염 여부를 밝히도록 되어있는 검사를 받도록 강제해서는 안된다. 또, 개인이 그러한 검사를 받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 사후 면담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신원과 HIV 감염 사실을 공식, 사적으로 조사해서 공개해서도 안 된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사적이고 기밀한 것이다. 따라서, 그런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과, 정보의 이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어떤식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검사 받는 이에게 완전히 알려준 경우에만 검사 결과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한 정보를 얻은 개인이나 단체는 공인된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의 건강 정보를 사용할 의무를 가진다.

AIDS 감염과 관련된 정보를 공인받지 못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할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다음은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경우들이다.

- 개인의 HIV 감염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강제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강제로 기재하는 경우.
- HIV나 AIDS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개인이나 단체가 강제로 보고, 수집, 저장, 처리하는 경우.
- 관련 검사 후에 HIV나 AIDS 감염 여부를 신고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 관련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HIV/AIDS 감염 사실과 감염자의 신원 그리고 사진을 발표 또는 유통하는 경우.
- 언론이 HIV 감염자들의 사례를 부당하게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관련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B. 자유와 안전 그리고 이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유와 안전 그리고 이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단지 HIV/AIDS에 감염되었다거나,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자가 본국 내에서나, 혹은 외국에서 이주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또는 격리, 검역 격리 또는 고립, 체포, 구류, 부당한 수색 그리고 압류와 같은 조치를 당하는 것에 대항할 권리를 일컫는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비합법적인 침해에 대해 법이 일반인에게 보장하는 보호는 단지 에이즈 감염 사실 때문에 축소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다음은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들이다.

- HIV 감염자들을 강제로 검역 격리하거나 혹은 고립시키는 경우.
- 본인의 동의 없이 백신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HIV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 HIV 감염자에게 거주지를 옮기거나 선택하는 등의 자국 내에서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
- 비자의 승인과 신청 또는 입국에 대한 사전 조건으로 HIV 감염 여부를 밝히도록 강요하거나, 단지 HIV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나 영주권(정치적 망명을 포함하여)의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 개인의 HIV 감염 여부를 이유로 입국을 거절하거나 추방하는 경우.
- 개인의 HIV 감염 여부를 이유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경우.

C.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와 처벌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존엄은 개인의 성별, 나이, 또는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종교적인 차이, 사회적 신분, 그리고 성적 선호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고유한 것이다. HIV/AIDS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모든 조치들은 비인간적이거나 개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당하기 쉬운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HIV/AIDS 감염자들, 혹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나 조롱, 비방, 고립, 격리를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조장하거나 묵과하거나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음은 위와 같은 상황을 위반한 경우들이다.

- HIV에 감염된 구류자나 제소자를 격리 수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간호와 의료 진료에 필요한 것 외에 다른 수준의 대우와 갇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개인(들)이 단지 그들의 HIV상태에 기초하여 다른 구류자들이나 피수용자들이 정기적으로 누리는 혜택들과 기회들과 그리고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 비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거나, 감염자가 치유 가능성이 있는 임상 실험에 자발적, 명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개인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경우.
- HIV 바이러스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자의 특정 행위를 불법화 하는 경우.
- HIV 감염자들을 차별하는 문화적인 관습을 묵과하는 경우.
- AIDS 감염자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중 관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또는, 사체에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기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경우.

D. 노동의 권리

노동의 권리는 고용의 평등권, 신분보장권, 노동의 기본권, 그리고 노동 조합과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일컫는다.

HIV/AIDS에 감염된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에게 부여되는 고용상의 이익과 신분보장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노동의 권리는 노동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해 대항할 자유를 또한 의미한다.

다음은 위와 같은 상황을 위반한 경우들이다.

- 고용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강제적인 HIV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 단지 개인의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 HIV 감염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좌천시키거나 강제로 전임시키는 경우, 혹은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가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경우.
- HIV 감염자에게 동료 피고용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묵과 또는 허용하는 등, 고용주가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 고용주나 고용주의 대리인, 혹은 직원들이 피고용인의 HIV 감염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
- 피고용인의 HIV 감염 사실을 강제적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을 해고하는 경우.

E. 교육을 받을 권리

일반대중에게 제공되는 공교육 및 사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의 즐거움과 교육을 받을 기회는 HIV/AIDS 감염자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교육기관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감염자들에게도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며, HIV 감염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위와 같은 상황을 위반한 경우들이다.

-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교육제도와 권리, 교육기회의 어음에 있어서 HIV/AIDS 감염자를 차별하는 경우.
- 감염 가능성이 높거나 HIV/AIDS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위의 교육기회를 거부하는 행위.

F.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일반대중에게 보장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서비스 특히 보형제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적절한 의료적, 과학적 정당성이 없는 한 HIV/AIDS 감염자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부가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져서는 안된다.

다음은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들이다.

- 사회보장제도 수혜의 조건으로 의무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 HIV 감염을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 HIV에 감염된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자에게 익명검사의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그밖에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복지제도를 제한하는 경우.
- HIV 감염 사실 때문에 주택분양에서 제외시키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혹은 강제로 퇴거시키는 등 임대료에 있어 차별을 가하는 경우.

G.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문 7항은 AIDS 감염자에게도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

위 원칙에 따라서 정부는 감염자들의 치료를 고려한 수용 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 정부는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감염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 회사가 HIV 감염자들이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강제적인 검사를 시행하거나, 그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기관이나 단체가 AIDS 감염자들을 차별대우하는 경우를 철저히 규제하여야 한다.

H.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질 권리

젊은 여성과 남성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 감염자들도 건전하고 책임있는 행동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은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들이다.

- 위와 같은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 반드시 HIV/AIDS 검사를 받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
- 감염자들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 감염 임신부와 태아에 대해 HIV검사를 강제한 경우.

- 부모의 감염을 이유로 태아의 유산을 강요하는 경우.
- 감염자들에게 불임을 강요하는 경우.

I. 치료와 간호를 받을 권리

정부는 감염자들이 차별과 재정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최고의 의료서비스와 상담, 치료,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시민들은 에이즈가 무엇이며 그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하며 분화적, 윤리적으로 공정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또한 개인의 결과와 지역사회의 권한 강화에 본질적인 요소로 콘돔과 깨끗한 주사바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J. 자립, 자결의 권리

HIV/AIDS 감염자, 여성, 윤락업 종사자, 혈관마약 사용자, 동성애자 등과 같은 약소그룹을 위한 차별 철폐 프로그램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요한 행동변화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단체, 지역사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인본주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감염자와 에이즈의 직, 간접적인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위의 사항은 다음에 의해서 실천이 가능하다.

- 자조(自助)와 상담, 동료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감염자 옹호 단체를 설립, 육성한다.
- 정책개발의 모든 단계와 그 실행, 결정에 위의 그룹들을 참여시킨다.
- 감염자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다른 약소그룹, 지역사회 공동체, 민간단체, 정부, 보건요원들 사이의 연결망과 파트너쉽을 구축한다.
-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에이즈 대응에 감염자들이 앞장서도록, 협조적인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파리에이즈회담 선언 94.12.1

번역 : 자원봉사자 심윤돈, 이민수, 진정현
 이 내용은 'UNDP'에서 발행한 아·태지역의 HIV 보고서중 APCASO의 인권협약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